

「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물가 상승률 반영을 통한 사용 요금의 현실화 및 징수 대상 종목 추가 등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·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정비(안 별표 1)
- 구미시 거주자 사용료 감면을 변경(안 제11조제1항제3호)
- 용어,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~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수상레저안전법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: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시설 개선에 따른 이용 종목을 확대하고 구미시 거주자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%에서 30%로 조정하는 등 사용료를 정비하고, 용어 및 조문 표현을 수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

○ 검토 결과,

- 타 시군 수상레포츠 시설 요금 대비 현실적인 사용료의 책정과 구미 시민 이용료 감면율의 조정으로 운영의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시민 이용료 감면율 축소로 이용율이 저하될 수 있으며, 체험 센터의 진입로 개선과 안내 표지판 설치, 간식·음료가 구매 가능한 편의시설 확충 등 이용 편의 제고를 통해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운영방식을 ‘사무형 위탁에서 수익창출형 위탁’으로 전환하는 만큼 수탁기관 선정 시 안전관리 능력과 함께 마케팅·상품개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